

③ 논 문

- 박순경, "칼바르트의 역사관 이해" 「바르트 신학연구」, 한국 바르트학회편 대한기독교서회, 1977.
- 신복윤, "시간, 영원" 신학지남 30권 1호, 1963, 3.
- 조요한, "Aristoteles의 시간관", 중전대학교논문집 제 3집, 1971.
- 에릭프랭크, "창조와 시간" 「철학적 이해와 종교적 진리」, 김하태 역, 현대기독교사상 전집 Vol. VI. 현대사상사, 1974.
- 차남진, "성서적인 시간개념과 새피조자의 이해", 신학지남 30권 1호, 1963.
- Hars. H., "Problem of Time" *The Idea of a Christian Philosophy esp—Essays in Honour of. D. H. Vollenhoren*, Wedge Publishing Foundation, 1973.
- Linton, C. D., "Our Bourne of Time" *Christianity Today*, 1912, December.
- Hoekema, A. A., "Recent Trends in Eschatology" *The Bible an The Future*. Appendix Eerdmans, 1979.

법과 율법

정 권 섭 교수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장)

1. 머리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창조로부터 인간은 고립된 존재일 수가 없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는 창조의 역사가 사회적 공동체의 시초요 그 당위성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창 2:24)는 말씀으로 가족관계의 시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같이 형성된 공동체가 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므로써 공동체 내부의 안위와 평화가 깨뜨려지게 된 것이다.

일찍이 법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공동체 내부에서의 인간관계를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파악하고, 이를 내부관계에 법이

라는 행위준칙이 없다면 이 사회는 피비린내 나는 투쟁장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여 이 사회에 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죄지은 인류공동체에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생활준칙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내린 준칙이 율법이요, 국가나 사회가 만든 규범이 곧 법인 것이다.

사회 내부에서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가운데는 사회규범인 법, 도덕, 윤리, 관습 등과 종교규범으로서의 특수규범인 계율 등이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종교규범도 사회규범에 포함되는 것이다.

2. 기능적 비교

사회규범과 종교규범은 그 사회적 기능과 효력에 따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법과 도덕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통한 경험법칙이고 계율은 하나님에 일방적으로 내린 선형법칙이다.

초대 교부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을 신정법과 인정법으로 분류하고, 신정법은 하나님의 질서이며 인정법은 사람의 질서라 했다. 한편, 칸트는 법을 자연법과 설정법으로 분류하고, 자연법은 신의 질서인 존재의 규범이고, 설정법은 사회질서인 당위의 규범이라 했다. 이상에서 우리는 규범을 존재양식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이것을 기능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국가규범인 설정법은 타율적 규범이고, 하나님에 제정하신 율법은 자율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는 “법과 강제기능”은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고, 예령 또한 “강제력이 없는 법은 태지 않는 불과 같다”고 하여 법의 실효성에 관하여 국가적 강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율법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인 내면성에 호소하여 사람의 자율적인 행동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든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출 19:5)라는 말씀 등을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언제나 타율적 강제를 전제로 하는데 비하여 율법은 인간의 내면적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서 연유했고, 인간은 믿음을 통하여 절대자인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그 계율이 행동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효력의 범위에 있어서도 고대 원시사회에서는 제정일치로서 법과 계율이 미분화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효력의 범위에 관하여 논할 바 못된다. 고대 로마 법학자 율피아누스는 이 점에 관하여 제정일치의 사회에서는 종교적 계율이 바로 법학이며 “법학은 인사(人事)와 신사(神事)의 지식이다”라고 간파하였듯이 그 당시로서는 법과 율법을 분리시키는 것이 별반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근대국가가 성립됨에 따라 제정이 분리됨으로써 비로소 국가의 법률과 종교적 계율이 각기 그 기능하는 바가 상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효력이 미치는 범위도 달라지게 된 것이다. 주로 국가의 법률이 영토와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효력이 미치는 데 대하여 종교적 계율은 신국(神國)의 건설 위에 그 주권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그의 피조물인 온 세상 전인류에게 파급되는 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 위에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구약시대에는 그의 언약인 율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으로서 그의 약속과 축복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당위성의 비교

규범으로서의 타당성에 있어서 국가의 법률은 형식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법이 제정되었는가의 적법성 여부와 실질적으로 그 규범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에 근거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일방적이고 편무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국가의 법률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되고 실시되는 규범이다. 그러나 법의 구체적 타당성으로 들고 있는 정의에 부합하느냐에 관하여는 국가의 법이 정의의 내용을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고 있는 점과 율법이 입법자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다는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 국가의 정의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수시로 가변성을 갖는 기준에 터잡고 있는데 비하여 하나님의 정의, 즉 그의 공의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성을 갖는 것이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율법은 가치 초월적인 규범인 데 대하여 국가의 법률은 가치 관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규범적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같은 차이점을 들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종교규범인 율법과 사회규범인 법 사이에는 그 구별이 확연치 않다.

크게 보면 결국 사회규범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에는 법, 도덕, 윤리, 관습 및 알게 모르게 광범위한 영역을 통하여 종교규범인 율법이 사회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행위준칙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생활규범으로서의 율법

인간사회는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는 야생동물의 생활도 아니요 그렇다고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의인들만의 생활도 아닌 것이다. 사람들의 심성은 천차만별이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동체 내부에는 상호간의 갈등, 대립, 투쟁, 분화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의 생활관계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관계로 보는 것이 오히려 옳을지도 모르겠다. 사람의 생김새가 각기 상이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성도 각기 달라 그 심성에 의하여 행동하는 바도 천차만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내부에는 각자가 원하는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 못한 채 불신의 벽만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만인이 원하는 평화, 그리고 생명과 재산의 안전, 공존과 공영을 통한 행복 등의 향유가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는 법이 이상으로 하는 질서가 정착되기 힘든 것이다.

율법이 추구하는 질서는 선협적이고 무가치적이며 고정불변의 질서인데 비하여 인간의 사고에 의해서 형성되고 경험에 의해서 다듬어진 법률은 가치관계적이며 불완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법과 율법은 한 범주 안에 있으면서 서로 일치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평행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에 나타난 율법사상은 본질적으로 양립될 수 없는 두 가지 원리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하나의 원리가 모세의 율법에서 보여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면, 전자는 정의와 사랑을 동일시한 견해요, 후자는 이들 둘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본 것이다.

구약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는 영원한 왕이요 입법자요 재판관이었다. 특히 입법자로서의 그에 관한 기술은 신명기 5 : 22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에 대하여 설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은 야웨가 산에서 불과 구름과 어둠 속에서 큰 소리로 너희 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 두 돌판에 쓰시어 나에게 주셨다'고 한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시편 147 : 19 이하에서 '그는 그의 말을 야곱에게 선포하시고 그의 법과 재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셨다'고 했으며, 같은 시편 119 : 72에서 '법은 야웨의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 등을 보더라도 야웨 스스로가 입법자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시편 119 : 137에서 ‘오 야웨여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의 판단은 정확하나이다. 당신은 정의와 신뢰 속에서 당신의 법을 선포하시나이다. 또한 같은 편 쪽에서 당신의 법도는 영원히 바르니이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은 모두 진리요 모든 정의로운 재판은 영원하리로다’라고 그의 정의로움을 찬미하고 있음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명기 4 : 1 이하에서 ‘내가 너희에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고 하면서 ‘오늘 내가 주는 이법만큼 정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어느 민족이 가졌더냐’고 반문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 법의 우월성과 그 법에 대한 자부심이 잘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사법적 기능에 대하여는 신명기 1 : 15 이하에서 그가 뽑은 재판관에게 당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은 어떤 사건에서 편파성을 보여서는 아니된다. 사람을 두려워 말고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소리를 꼭같이 들으라. 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심으로써 재판의 신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의 신수성에 관한 다른 기록인 사무엘상 2 : 10에서 ‘야웨는 지구의 끝을 재판하신다’고 하고 시편 50 : 6에서도 ‘하늘은 그의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은 재판을 주신다’로 선언하여 재판관은 단순한 그의 도구로 사용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시편 9 : 7 이하에서도 ‘그는 재판의 판을 쓰셨고 정의로 세계를 재판하신다. 그는 형평으로 선고하신다’고 적고 있으며 또한 백성들 역시 재판관 야웨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야웨는 백성을 재판하신다. 오 야웨여 나의 의와 성실함으로 나를 재판하소서’라고 함으로써 정의의 신, 형평의 신, 공의의 신이신 야웨 하나님을 자기 백성의 재판장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사상은 야웨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계약이 성취되고 이행되기 위하여 그가 친히 재판장으로서 인간과 체결한 계약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백성에게 공의로 실천시킬 것을 보증하고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약에 의하여 야웨는 그의 백성을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야웨를 신뢰하고 그의 법을 따를 의무를 지게 한다. 출애굽기 24장과 34장에 의하면 야웨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약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락함으로써 그 계약이 원만하게 성립된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며 야웨도 이스라엘도 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상호 구속적 관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신명기 7 : 7 이하에서 ‘그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다’고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너는 오늘 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심으로써 그 계약의 쌍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출애굽기 20 : 6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더라도 그와의 언약에 대한 이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므로 이스라엘도 의를 실천하여야 하며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므로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에 세워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창 17 : 7절)고 하시므로 언약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율법을 준수하고 이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서 그가 앞서 약속을 실천하신 것이다. 고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선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마땅히 계명을 따르고 준행할 후속적 의무를 지게 한 것이다.(신 9 : 6 - 12)

5. 율법의 최소한으로서의 십계명

율법의 기초가 되는 언약에서 그 첫 번째 계명은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소극적으로는 나 외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사랑의 원리는 단순한 감정적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실천시키기 위한 실천적 사랑 이란 것이다.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십계명에서 제계화된 언약은 이스라엘의 행동양식을 좌우하는 신앙적, 도덕적 실천원리를 집약한 것으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큰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지존하신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한 백성에게 마땅히 준행해야 할 충성을 요구하신 것이다. 곧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모든 도성, 가족들 그리고 각 개인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언약의 상대방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그에게 충성을 것을 요구하셨다. 충성은 직접적이요 일위적인 것이므로 어떠한 타자의 개입도 관여도 용납을 불허하는 것이다. 절대적인 충성을 다짐하고 보장함으로서 비로소 그의 주권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도 확립되는 것이다.

둘째, 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 것과 또한 이들을 경배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언약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질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이에는 타의 존재의 개입은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일이 절대적이어야 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앙이요 죄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신뢰하고 따르는 일은 맹목적이어야 한다.

셋째, 계명은 그의 신성에 관하여 순수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의로 그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에 대하여 엄히 경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속성을 무orthy하며 절대적인 것이다. 그의 이름에는 항상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은총의 대상으로 높여야 하는 것이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문제로서 신사와 인사를 구별지어 엿새동안 사람의 일을 도모하다가 칠일째는 신사를 돌보는 일, 즉 예배에 전념하

라는 뜻이다. 예배는 축복의 근원이기에, 곧 안식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련된 날이기에 이를 외면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다섯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나를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인지만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신적 대위자인 것이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공경함이요 사랑함이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그 은혜를 감사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여섯째, 계명으로 살인을 금하고 있다. 살인에는 사회적 법률과 달리 정신적 살인과 육체적 살인이 있다. 성경에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 정신적 살인이다. 또한 육체적 살인도 과실살인과 모살이 있다. 성경에는 과실사와 모살에 관하여 각기 다른 책임을 묻고 있으나 어찌되었든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음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목숨을 빼앗는 결과가 되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죄인 것이다. 인류 최초의 죄가 형제를 모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인식한다면 십계명의 이 대목이야말로 깊이 읊미해야 할 계명임에 틀림없다.

일곱째, 간음행위를 금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가 있게 된 것은 창조의 질서이며, 또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혼인을 통하여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더 없는 축복이요 우주의 질서이다. 성경에서 들고 있는 간음에 관한 교훈에는 육체적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음욕을 품는 내심의 행위까지 간음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계명은 정혼한 부부 외에는 음행을 금함으로써 혼인의 순결을 지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녀관계의 질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덟째로, 도덕질을 금하고 있다. 이상에서는 대신관계, 대인관계의 직접적 질서에 관하여 규정한 데 대하여 이 계명은 대물관계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도적질에 관해서는 법률에 강도, 철도 등으로 나누고 있으나

이는 모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안전이 계명으로 보장되면 곧 자기 재물에 대한 안전이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명은 물적 질서의 파괴가 곧 죄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아홉째로, 거짓 증거를 금하고 있다. 로마법에서는 거짓 증거를 서게 되면 증인 자격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재판받을 일이 생겨 타인으로 하여금 증인을 세울 일이 있어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증인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관한 시비를 가리려 할 때 그 재판이 정의롭게 판결되도록 조력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거짓 증거를 서게 되면 재판의 공정성을 상실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를 서는 일은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다. 다른 아홉 가지 계명은 모두 외부적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이 마지막 계명만은 내심의 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모든 행위가 내심의 의사에서부터 연유한다고 보면 이 계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도 내심의 효과 의사와 외부의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인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책임도 면책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명에서 내심의 의사 자체를 금지한 것은 모든 범법행위를 원초적으로 막는 결과를 낳게 하는 중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6. 맷음말

법과 율법의 관계와 율법의 사회적 종교적 기능을 고찰함에 있어 첫째, 그 차이점으로는 그 적법성에 있어 법률이 인정법으로서 국가질서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데 비하여 율법은 신정법으로서 그 적용 목적이 신국의 건설과 그 주권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고, 또한 그 규범의 제정 절차에 있어서도 법률은 신정법 제정 절차에 따르는 데 비하여 율법은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로 이루어진 점과, 그 효력에 있어서도 법은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혹은 사회적 강제를 수반하는데 비하여 율법은 신국의 질서에 순종하고 자율적으로 그 질서가 형성 발전하므로서 장래의 축복과 응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이 타율적 질서인 데 비하여 율법은 자율적 질서란 점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그리고 효력 범위에 있어서도 법은 그 법이 제정 실시되는 지역성에 한정되는 데 비하여 율법은 신국 질서이기 때문에 그의 피조물 모두에게 미치는 효과가 있다.

끝으로 율법의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은 신국의 주권, 신국 백성의 권리와 의무 등 공법성과 가족관계, 남녀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사법관계 및 심지어 내심의 심성에 관한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성도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국가생활인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도 그 율법 하나만으로 충분히 사회적 안녕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질서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율법의 준수가 곧 법없이 살 수 있는 사람과 사회를 만들 것이다.